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 계약서류 보관 의무 명시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총자산한도 제한 신설〉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4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 양수자의 계약서류 보관의무 명시 등	3
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제한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
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
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
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Ⅲ. 검토의견

1.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 양수자의 계약서류 보관의무 명시 등

- 개정안은 ①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 채권 양수자로 하여금 대부계약서와 관계서류를 양수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② 채무 변제 후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부계약서와 관계서류의 원본 반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양수한 자가 해당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u>
<u>⑥</u> (생략) <u><신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u>⑧ 대부업자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2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0. (생략) ③ (생략)	다.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 서류 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u> 6.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로 하여금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¹⁾(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2) 「대부업법」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³⁾에게도 동일한 보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현행법 해석상 불명확한 상태임.

○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⁴⁾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자도 계약서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등 미보관 적발 현황>

대상기관명	검사기간	지적사항 제목	적발 건수
OOO	2020. 11. 23. ~ 11. 27.	매입채권 대부계약서 보관 소홀	357
OOO	2019. 4. 9. ~ 4. 12.	원인서류 부존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수 유의	1

(자료: 금융감독원)

□ 이에 개정안은 대부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서 등의 보관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3) 「대부업법」 제2조(정의)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부업법 제6조제5항과 제6항은 권익침해 우려가 높고 법적 증거력 확보에도 취약한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대부업자에게도 계약관계서류를 충분한 기간 동안 보관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을시 이에 응하도록 한 제6조제6항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가 모든 보유 대부채권에 대해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자가 계약체결 당시의 대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의 적용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부채권을 매입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자인 대부업자로서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7. 2. 6.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 한편 「민법」 제475조⁵⁾에서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대부업 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⁶⁾ 대부계약의 본인 외에 보증인과 대리인에게까지 계약서 등 반환청구권이 있는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수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부업자가 계약서 등 원본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이용자는 소송 등을 통해 대부계약의 존부 등 권리관계를 주장하고자 하여도 증빙자료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됨.

□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대부채권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 보증인 및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의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반환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관계서류 반환 청구권의 범위를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5)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6)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대부 채무 상환 완료 후 채무자의 계약서 등 반환 청구권 및 대부업자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제한

-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의 총자산한도 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u> ② (생략)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시·도지사등에 등록한 대부업자</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대부업법상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3) 법인으로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이 중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⁷⁾.

7) 「대부업법」(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예정)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현행법상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10배) 제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록업자와 시·도지사 등록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업자의 재정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지는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운영되는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부채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할 경우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3년 말 기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10.3%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 10배를 초과하였으며, 9.5%는 12배를 초과하였음.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현황>

(대부업자수(비율), 2023년 말 기준)

구분	총 등록 대부업자 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10배 이하	10배 초과	12배 초과
법인	1,755	1,143 (65.1%)	612 (34.9%)	556 (31.7%)
개인	5,873	5,696 (97.0%)	177 (3.0%)	171 (2.9%)
계	7,628	6,839 (89.7%)	789 (10.3%)	727 (9.5%)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재가공)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총자산한도 제한을 적용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금융위 등록 우수 대부업자⁸⁾⁹⁾에 대하여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현행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

8)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로서 저신용층(신용평점 하위 10%) 대상 개인신용대출의 잔액이 ¹⁾100억 이상 또는 ²⁾전체 대출잔액의 70%이상인 경우 선정(「대부업등 감독규정」 별표1)

9) 참고로, 우수 대부업자 지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74호)이 2024. 12. 26. 발의되어 정부위원회에 회부되었음.